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8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한○정	서울 강서구 화곡로 68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김○명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58번5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강○옥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한○정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혐의 - (주)참빛조경(2018.5.24.~2018.8.6.) - (유)성림건설(2018.8.7.~2021.10.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김○명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혐의 - (유)모아건설(2020.10.26.~2021.9.3.)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강○옥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혐의 - (주)참빛조경(2020.8.19.~2021.10.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5. 21.(화)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